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제도 개선방안

이경섭*

2015 회계연도부터는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가 정식결산서로서 결산검사는 물론 의회의 결산심의와 결산승인을 받게 되었고 출납폐쇄기한이 삭제되어 결산일정이 2개월 단축되었다.

결산검사의 강화방안으로 수행주체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체감사기구에서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방안, 안전행정부 소속 또는 광역시별로 전담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이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여러 장애요인이 있고 장기간 소요된다. 현 결산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 결산검사 제도는 감사위원을 공모하지 않고 청탁에 의한 연줄로 선임하고 의회의원 최고 3인을 포함하며 일부에서는 단체장이 1-3인의 위원 추천하는 바 공모방식으로, 의회의원은 1명만, 그리고 단체장의 추천은 배제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보수는 적정보수로 하되 조례로 정하지 말고 예산편성에 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문 회계검사 전문가나 재정전문가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기간 제척하여야 할 전임 예산·회계과장을 포함하는바 개선되어야 한다. 감사위원에게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독립성, 자료의 공적사용,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외부누설금지 및 비밀엄수 등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검사기간 동안 성실히 검사에 임하여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내용의 검사준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의 선임, 감사범위

I. 머리말

2014.5.28. 지방재정법 개정 시에 지방자치단체 결산과 관련한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서 종전의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의 결산을 분리하던 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결산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다음내용이 포함된다.

○ 결산 개요

* 전, 감사원 국장, ksleebai@hanmail.net

- 세입·세출결산
-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순자산변동표
- 성과보고서

이제까지 의회의 결산심사와 결산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로 되어 있던 재무회계의 재무제표를 정식 결산서로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는 물론 지방의회의 결산심사와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무회계의 결산검사 할 범위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내용이 반영된 재무회계 검사매뉴얼의 마련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2014 회계연도까지는 지방재정법 제8조에서 출납폐쇄기한을 두었으나 2015 회계연도부터는 국가의 재정통계와 일치시키고 또한 결산지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납폐쇄기한이 삭제된다.

그 결과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10일내에 완결하여야 함으로써 종전의 결산일정보다 2개월 단축된다. 2월말 까지 결산서의 작성이 완료되며 3월 중순까지 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고 이어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 등 결산일정이 많이 단축된다.

이러한 결산일정 단축에서 고려할 것은 결산검사 일정과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기간을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많은 공인회계사를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예산회계 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의 결산검사를 하는 경우에 현재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기능이 미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우에는 헌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에서는 세입·세출의 결산확인은 물론 예산 집행이나 수입금 징수, 계약 및 보조금 등 회계사무 집행 및 국유재산 관리 등 회계업무에 대한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결산검사보고 에서는 이러한 회계검사 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성과감사나 특정사항감사는 물론 국민감사청구에 의하 감사 또는 국회에서 매년 감사 의뢰한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는 국회의 결산심의회와 결산승인의 기초 및 다음해 예산편성 심의회 기초자료인 동시에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의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보고서는 의회의 결산심사와 결산승인, 행정감사의 자료로서의 활용도도 매우 낮으며 시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 강화방안으로 결산검사 수행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 방안은 현 자체감사기구에서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방안,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는 방안,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의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그리 쉽게 적용될 것도 아니며 이러한 논의는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2015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의 결산검사제도하에서 실태와 제문제점 등과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등도 결산검사를 강화하는 가장 실현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결산검사 매뉴얼이 나오기 이전까지 대다수의 결산검사위원은 기본회계검사의 개념이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실제 회계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2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자 안전행정부는 결산검사 매뉴얼을 마련,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결산검사시기 즈음하여 1일 4-6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기관의 재무회계 검사업무를 지원할 공인회계사에게 5일 40시간의 훈련과정을 두는 것과 너무나 대조되며 교육과정이 미흡하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지켜야 할 독립성이나 자료의 적정사용, 비밀엄수, 검사자세 등 일반적인 내용이나 검사계획, 검사절차, 검사실시기준, 보고기준 등의 준칙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감사위원들에게는 예산회계 검사기법 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의 활용에 대한 검사기법도 함께 하여야 하므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수행주체와 관련된 각 대안의 실현성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현 결산검사제도와 관련된 운영실태, 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II. 결산검사 수행주체의 대안검토

1. 자체감사기구에서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방안

결산검사 강화 방안의 하나로 공공 감사법에서 개방형으로 선임되는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관에게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 방안의 모델은 일본의 자치단체이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하자면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감사의 독립성은 신분상의 독립성과 재정상의 독립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감사수행 권한은 개방형 감사관이 갖지만 실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들의 인사권이나 재정권은 감사관이 아닌 당해 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현실에 있어서도 광역시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요원들은 소속한 시·도 본청에 대한 회계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초단체나 산하 공기업 등을 주로 감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감사실에서 특별한 문제가 되기 전에는 본부 재무과 등의 회계집행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 방안으로 하는 경우 각 감사요원의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과 실제 승진심사 시 투표권한을 가지고 있는 간부직원의 잘·잘못을 결산검사에 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개방형 감사관은 감사활동 등을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는 바 실제 운영을 보면 양당 간의 정쟁(政爭)으로 호된 질책이나 옹호 등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감사관에게 의회 의원 등이 예산을 많이 쓰기 위해 편법예산편성 등의 문제점을 하는 내용의 지적은 물론 단체장은 감사관의 연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단체장이 집행한 회계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자체직원을 선임하여 감사관 보직이 끝나면 다른 국장으로 전보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주정부 감사관과 같이 인사권을 보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러한 제도 도입이 매우 어렵다.

감사실 직원은 평생 감사만 하여야 한다면 승진 등 불이익으로 현 자체감사기구 소속직원의 상당한 반대도 예상된다.

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의 정책으로 법령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공공감사법이 발의되

고 개정되기에 거의 10-20여년이 소요된 것과 같이 이러한 제도를 단기간에는 법령에 반영하여 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2. 전담기구 설치방안

두 번째 방안으로 자치단체의 결산검사는 물론 회계검사 및 행정사무 감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상설 감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 감사기구는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의 소속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일부 주 정부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에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나 이 기구는 자체감사기구이며 외부감사기구는 아니다. 미국의 주 정부 감사관(IG: Inspector General)을 외부감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감사기구의 설치에 현 공공감사법에 의한 개방형 감사관과 업무가 중복되어 이 기구 신설에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남는다. 몇 명 안 되는 직원으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할 수도 없다.

또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의 결산검사를 포함한 회계검사와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안전행정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관장부서 산하에 상설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나라도 없다.

내용상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상설 자치단체 감사기구를 두는 것은 중앙에서 지방자치체를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엄청난 반발은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감사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현 불가능 한 대안이다.

독립된 상설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를 두는 나라는 영국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거의 없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최고 회계감사기구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감사의 독립된 지위와 업무상 독립성을 규정하지만 정부 편제상 형식적 소속 구분에서도 국왕이 있는 나라는 어김없이 국왕 소속(예, 영국, 일본 등)으로 하고 있고 정치 환경 상 의회소속(예, 미국 등)으로 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행정부 수반소속(우리나라 등)으로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일부 대륙형 감사제도를 표방하는 프랑스나 칠레 같은 나라에서는 감사원 산하에 지방감사원을 두고 이 기관에서 자치단체 감사를 담당하는 경우는 있다.

영국의 회계검사위원회(Audit Commission)는 독립된 기구이며 지방자치단체를 관할 행정부의 산하부서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이 기구의 특징은 자체 감사관을 보유하지만 민간법인과 함께 자치단체의 회계검사를 담당하며 위원회에서는 민간공인회계사 및 보유한 종사자를 각

자치단체의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정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그러나 이 기구는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아니고 재정조달은 자치단체로부터 감사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민간법인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감사접근 방법으로 수행하는 결산검사가 대부분인데 그 감사의 편익이 적고 효과가 미약하다고 하여 폐지위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안전행정부 산하의 독립된 감사기구로는 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대통령 또는 국회소속 지방자치단체 상설감사기구의 신설은 현 여건으로 보아 거론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감사원의 산하기관으로 신설하는 것도 여러 문제가 남는다.

3.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도입방안

자치단체의 재무회계의 결산검사를 외부공인회계사 회사에 감사의뢰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공인회계사들이 감사원의 회계검사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재무제표 감사 접근방식으로는 별 편익이 없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정부부문의 회계검사 방식으로 하여 달라고 주문하기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감사원과 같이 정부기관 예산편성이나 계약, 보조금 교부 등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여부나 당, 부당, 경제성이나 합리성 등 업무감사를 하는 것은 서툴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정부재정에 대한 지식도 없고 교육훈련도 없이 이러한 회계검사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제까지 피 감사기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던 고정관념을 차라리 이러한 관념이 없는 회계검사 전문가 보다 감사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부문에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경우는 국가회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인증을 위하여 감사를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등 직영공기업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나 결산승인은 물론 감사수혜자인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재정과 관련한 회계책임성 확보나 의사결정에 별 편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경우 감사원은 위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별도로 회계사무 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결산확인을 따로 한다.

공기업 등 상당수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지만 감사원에서 별도의 결산검사를 한다. 감사원의 결산검사에는 공기업 운영에서 발생한 제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 내용은 국회에서 문제 삼지만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결과에는 별 내용이 없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분식결산 할 사유나 개연성이 거의 없는데 이를 감사중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2, 2013 회계연도 8개 광역자치단체의 상수도 특별회계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를 모두 보았으나 회계책임성 확보나 재정관리에 도움이 되는 감사결과는 단 한줄도 보지 못했다.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관리자가 분식회계를 할 사유도 없고 하지도 않는 데 공인회계사들은 분식회계 적발을 위한 감사체제로 감사하기 때문이다.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감사편익은 훨씬 못 미치고 있어 과도한 보수라고 여겨졌다. 따라서 민간부문 재무제표 방식의 감사를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현 지방재정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와 중복될 뿐 아니라 별 편익이 없어 이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공인회계사들의 보수는 결산검사위원의 보수보다 월등히 높은바 기존의 결산검사위원의 보수를 300-500% 인상하여 같은 수준으로 맞출 수도 없다. 그렇다고 편익도 별로 없는데 이들에게만 시민의 세금으로 높은 보수를 줄 수도 없다.

4. 현 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서 의회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광역 단체의 경우 5인에서 10인,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3-5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검사인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1인을 임명하고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최고 3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보수는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표준조례 없이 각각 규정하여 통일되어 있지 않다.

안전행정부에서 최근에 예산회계 결산검사 매뉴얼도 제정하여 교육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수준으로는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 검사인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다.

- 결산검사 위원을 공모하지 않고 청탁에 의한 연줄로 선임
- 광역자치단체에서 의회의원 3명의 결산검사위원 임명
-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검자인 단체장이 1-3인의 위원 추천
- 일정기간 경과하지 않은 전임 회계과장 및 예산과장 선임

둘째 : 회계검사나 재정 전문가의 선임 제한.

- 정부부문이나 자치단체의 회계검사 경력자 등 전문가 배제
- 정부부문의 재정운영 경력자 등 전문가 배제(예,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결산업무 경력자)

셋째 : 검사범위 불명확 및 교육훈련 미흡

- 결산검사 범위 불명확(감사라 인식하지 않거나 검사대상의 자료요구)
- 재무회계 감사중점을 상장법인 검사방식으로는 검토와 중복, 편익없음.
- 현재 1일 희망자에 의한 4-6간 교육으로 매우 미흡, 체계적 교육필요

넷째 : 검사인이 지켜야할 일반기준, 실시기준 보고기준 등 미제정

- 검사인의 독립성, 자료의 공적사용,
-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외부누설금지 및 비밀엄수
- 위압적 자세금지, 불성실한 근무지양, 성실한 검사자세
- 체계적인 감사절차에 의한 검사업무 수행
- 일일 검사상황 보고 및 검사결과의 체계적 보고

Ⅲ. 결산검사 범위 및 준거기준

1. 결산검사 범위

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 검사사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위 결산검사에는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가 제외되므로 위 규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위 규정의 문제점은 결산검사는 감사위원들이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결산

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는 데 회계검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일선에서는 이를 잘못 알고 일부 직원들이 결산검사를 마치 회계검사나 감사와 같이 한다고 불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결산검사 위원도 결산검사는 회계검사와 다른 것으로 잘못 알고 회계검사 자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경우에는 결산검사는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데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¹⁾

결산검사 범위에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 비 회계 사무는 검사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여소 야대의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정당과 소속을 달리하는 의회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이 평소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자 비회계사무의 자료인데도 결산검사범위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근거로 부당한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결산검사 위원은 타인의 부탁으로 검사자료 요구에서 검사와 관련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현행규정은 예비비나 채무부담행위 등의 내용을 회계검사에서 당연히 포함될 내용인데 계속비 등의 결산을 세입·세출 결산과 분리하여 표시함으로써 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비 등은 결산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오고 있으며 물품이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결산검사의 관련규정 및 자료 요구권 등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 정의를 회계검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비회계 사무를 제외하도록 하며 성과보고서도 결산서의 일부로서 검사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재무회계의 결산검사 중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는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검토 내용에는 작성한 재무제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부합하고 예산회계의 회계자료가 재무회계의 회계처리에서 적정하게 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감사원법 제21조 및 제22조 제2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접근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 부합여부는 「검토」에서 다루고 있고 진실성 여부는 물론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예산회계 결산검사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의 민간부문 회계감사 방식으로는 중복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등의 감사결과는 지방의회, 집행주체나 시민들의 재정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회계책임 확보에 별 편익을 주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의회나 자치단체 재정집행자 및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감사범위가 정하여 지면 감사준거기준 및 감사접근방법 등이 포함된 결산검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의회의원에게는 재무제표 작성방법이나 회계처리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무제표와 그 명세서 등이 주는 정보의 내용으로 예산과 법규대로 집행하고 또한 사업 등을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등 재무제표의 활용정보가 더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는 예산회계 관련 결산검사에서는 합법성과 법규 준용 감사를 중점으로 하며 재무회계의 결산검사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자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감사를 중점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이용은 물론 그 세부 내용인 단위, 세부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원가 등을 비교하여 사업의 비경제, 비효율 및 낭비 여부 등의 유무와 이의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자산이나 부채관리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경우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포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감사원에서는 재무제표의 결산검사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의 감사범위나 준거기준, 감사접근 방법 등은 분식결산 유무에 중점을 두는 민간부문의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회계감사의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물론 국가의 자산 및 부채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공인회계사를 동원하여 수행한 감사결과는 분식회계를 하기 위한 의도적인 회계처리는 한 건도 없고 회계지식 미흡으로 인한 경미한 회계처리 지적에 머물고 있다. 정부회계에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분식회계를 할 만한 사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를 감사중점(audit issue)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최근 감사원에서 수행하는 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공인회계사들의 검사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는 정부 및 국회의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보니 감사원 감사결과를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복식부기 도입에 의하여 재무제표는 물론 그 감사결과는 재정운영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나 자산 및 부채관리의 문제점 등 재무제표에 의하여 사업실패 등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고의 등으로 회계를 부당히 처리하여 이의 책임을 추궁하는 회계책임성 확보 문제도 지적한 바 없고 금액은 매우 크지만 내용은 별거 아닌 대부분 부채나 비용과다, 과소 계상 등 경미한 회계 처리 문제에 머무르고 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행초기인 2011 및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제대로 잡기위한 회계 질서 확립에는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미 어느 정도 회계처리 과정에서 나올 문제점은 다 나왔다는 것이다.

2013년도 회계연도 분 결산검사의 경우에는 감사의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들은 무엇인가 지적하여 다음해 용역에서 다시 선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리하여 지적하려는 감사 즉, 감사지적이 회계질서 확립이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 등 감사수요자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감사인 자기 자신의 위한 금액위주, 건수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국회나 시민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사원의 재무제표 감사는 단순히 회계처리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회계정보가 주는 여러 문제점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 재정집행과 의회의 승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범위나 접근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수준의 감사패턴이라면 공인회계사의 수를 거의 1/5 수준으로 줄이거나 차출 자체를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 별 편익이 없는 부문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감사할 필요는 없다.

3. 결산검사 준거기준

정부회계에서는 예산회계의 재정적자인지 여부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그리스 사태 등에서 본바와 같이 재정적자는 국민의 복지비 삭감뿐만 아니라 고율의 이자율 등으로 나라경제 전체에 미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실제 재정적자인데도 이를 흑자인 것 같이 분식 결산하여 문제가 된 바 있으나 정부회계의 재무회계의 재정운영결과에 대하여는 분식할 사유도 없으며 의도적으로 분식결산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와 같은 재정운영성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회계에서의 사업형 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의 재정상태표에서 자산·부채나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이해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정부회계에서는 기업회계와 달리 투자한 자본이 없어 개인의 주식의 가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채의 경우에는 향후 시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보여주지만 정부회계에서는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자연자산이나 문화재 등도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또한 자산은 관리를 목적으로 가액을 평가하며 시장가치가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1인당 지분도 의미가 없다.

상장법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적용하는 감사의 준거기준(audit criteria)은 작성한 재무제표가 진실하고 공정하게(true and fair) 기업회계기준이나 GAAP 등에 부합하게 작성하였는 지 여부에 있으며 감사인은 검사결과 의견을 표명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로 표시된 내용이나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적으로 표시된 내용이 주주나 경영인, 종업원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진실하고 공정하게 회계기준 등에 부합하게 작성한 지 여부에 감사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인회계사의 민간부문 회계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와의 차이는 양자 모두 회계처리 한 내용이 회계기준에 부합한 지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점은 민간부문 회계감사에서는 회계처리 결과가 진실한 지 여부를 포함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회계에서 결산검사는 민간부문의 재무제표 감사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영국의 회계검사위원회(audit commission)는 1983년 이후 자체감사요원과 공공부문 감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를 담당하여 왔으나 이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지 않고 예산회계만 있었다.

예산회계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주된 회계내용이 되므로 결산검사는 회계기준 부합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법과 예산이 정한 바 대로 수입 및 지출 하였는지 여부 등 합법성과 효율성(3 Es), 합리성 등의 준거기준을 사용하였고 특히 성과(Value for money)를 중요시 여겼다.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관이 결산검사를 하거나 민간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한 경우에도 2001년 발생주의 회계 도입 이전까지 예산회계를 사용하였으므로 결산검사는 기업회계의 공인회계사 감사와 같이 회계기준 부합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특히 연방정부에 단일 감사법(single audit act)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데 그 감사준거기준도 예산회계의 회계감사 준거기준을 사용하였으며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도 이러한 준거기준은 변함이 없다.

현재 일본의 경우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지만 회계처리과정에서 발

생주의 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 후에 변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준 발생주의 회계이고 결산검사는 예산회계의 감사준거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감사준거기준은 법령이나 규칙, 예산 등을 적용하는 합법성(regularity),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타당성(propriety), 합리성(rationality) 및 효율성(3Es) 등의 더 넓은 잣대를 사용한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출 등이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며 받아들인 세금 등은 제대로 처리되었는 지 등 예산 및 법규의 준수 즉 순응(compliance)과 진실성(true)여부에 대한 내용이 감사의 중점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검사는 검사인이 기업회계와 같이 결산결과에 적정여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산확인을 하는 것이다.

IV.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1. 결산검사위원 자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서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광역의 경우 5인에서 10인,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3-5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검사인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1인을 임명하고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최고 3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 검사인원의 경우 소규모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 의원 포함 3인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고 조금 규모가 큰 기초 자치단체에서 4인 (예, 일산시)내지 5인(부천시)을 임명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모두 의회의원 3인을 포함 10인을 임명하고 있다.

광역 및 대도시의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을 주로 선임하지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전직 예산과장 또는 회계과장 등이 대부분이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표준조례 없이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그 조례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자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1) 의회의원

의회의원은 정당소속이 많아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인 경우에는 문제되는 것을 꺼리고 반대로 다른 당인 경우 결산검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의회의원은 결산검사의 외관상 독립성의 결격 사유가 된다.

20 여년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제도 마련 시에는 의회의원은 정당소속이 아니고 또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봉사자의 신분이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으나 이후 정당소속으로 변경되었고 정쟁을 일삼는 현실에서는 문제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의회의원이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한편 많은 수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독립성에 전면 배치되므로 개선되어야 하나 일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 의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민간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 만으로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회와 연결 및 집행주체의 자료요구, 검사위원의 복무감독 등 행정적으로 관리할 의회의원 1명은 필요하다는 데 수긍이 간다.

의회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의 대표가 되어 검사위원들을 통할 하지만 직무상으로는 각 결산검사인의 검사사항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검사준칙 등에 담을 필요가 있다.

(2) 공공부문 감사 전문가 등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라도 정부부문의 회계검사 전문지식을 갖춘 감사경력자는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분야에 근무한 경력자(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부서에서 결산 업무 담당, 기획예산처 예산 및 회계부서 근무자)는 체계적인 결산검사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이 교육을 받은 경우면 결산검사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정부부문의 회계검사나 예산 및 회계업무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정부재정의 회계검사에 경험이 전혀 없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²⁾보다 지방재정업무 회계검사에 더 정통하며 결산검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예산회계는 부기나 기업회계 지식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2) 대부분의 공인회계사는 상장법인의 회계검사를 하였고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 적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 경험을 갖춘 사람은 매우 적으며 세무사의 경우에도 거의 같다. 그들은 계속비나 자금 없는 사고이월 등의 개념을 안전행정부의 검사 매뉴얼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정부부문의 회계검사 유경험자³⁾나 예산 및 회계 경력자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정부부문 회계검사 경력자를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장벽을 치고 있다. 회계검사의 전문가는 상식적으로도 정부부문이나 자치단체 회계검사 유경험자임은 알 수 있는 데도 이를 제외한 것이다. 이는 처음 규정을 만들 때 감사유경험자 등이 와서 결산검사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바라지 않은 면이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전직 자치단체의 예산과장이나 회계과장을 자격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인회계사가 없거나 소수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제 이들이 주로 결산검사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히려 당해 자치단체의 전임 예산과장 등은 감사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퇴직 후 일정기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는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이나 재무제표 등 회계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회계업무의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로서 재무관리의 전문가로서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이나 재산관리 등 재정업무를 다루는 데는 소득계산이나 당기순이익 계산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회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부문의 재정은 기업회계와 전혀 다른 안목에서 예산회계 시스템이나 재산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는 별도 정부부문 회계에 대한 경험이나 교육훈련 등을 거치지 않고는 정부의 예산이나 수입 지출, 공유재산, 물품이나 기금 등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정부 회계의 회계검사 기법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법과 유사하나 회계처리보다 회계업무 그 자체에 대한 감사를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업무흐름을 알아야 하며 감사준거 기준도 공인회계사의 감사기준과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회계나 감사전문가와 동일하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거친 뒤에야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안전행정부의 1일 4-6시간 교육으로는 매우 부족하며 이와 같은 몇 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하여 결산검사를 제대로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감사실에만 오래 근무하고 회계검사를 전문으로 한 공무원이 상당하다. 이들이 퇴직 한 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결산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행정부 산하 공공단체나 한국공인 회계사회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지식을 갖추었음을 표시하는 시험을 거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과정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결산검사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준칙, 지방재정법, 예산회계 및 수입지출, 계약, 보조금 등의 내용은 물론 재무회계 회계기준과 예산회계 재무회계의 결산검사 기법 및 결산검사 사례 등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무회계의 경우 향후 결산검사 중점은 회계처리의 적부 보다 재무정보의 활용에 의한 결산검사를 하여야 하므로 회계처리와 관련되는 회계기준의 이해 등에 많은 교육시간을 배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감사원의 결산검사에 동원되는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 주최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교육훈련 비용(약 20 여만원)은 각자 부담⁴⁾으로 하고 있다. 결산검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비로 이러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보수 등

(1) 검사인원

의회의원은 외관상 독립성의 결격 사유가 되지만 자치단체별로 1인을 대표로서 선임할 필요가 있다. 그 임무는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며 검사자료 요구나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장애를 제거하고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민간검사 위원의 복무 등을 점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회의원인 검사위원은 대표이지만 각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에 항에 관여하는 등 독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않된다.

또한 발생주의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재무제표의 활용에 의한 결산검사 업무를 중점으로 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로서 교육을 받은 자격자를 우선하지만 반드시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재의 검사인원수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4명에서 7명, 광역의 경우 8명에서 12명으로 밴드를 정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검사위원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 교육훈련을 참가하면서 각자의 비용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무료인 경우는 수강자세에서 차이가 나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시험수준은 어렵지 않게 하더라도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선임 방법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서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의 운영위원회와 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의 상당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검사위원의 1명에서 3명을 단체의 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검사위원의 선임은 자치단체 결산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전직 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과장 경력의 공무원 등이 개별로 의회의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여 선임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인맥 등이 없는 공인회계사 등은 결산검사 업무에 참여가 불가능 하다.

검사위원의 선발을 친분이나 연줄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독립성 (Independence)을 확보할 수 없어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없다. 단체장이 의뢰한 검사인이 단체장이 집행한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제기하기 어렵다.

통상 의회 의장은 다수당의 소속의원이 되는 것이 상례인데 의장은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인 경우에는 검사위원이 지적한 검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불편해 할 수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위촉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도 선임하여 준 의회관계자들에게 곁끄러운 내용의 주요사업 등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 결산검사위원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로 부터 신분상으로는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선발 시스템은 투명한 절차로 선임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검사위원의 1명 또는 3명을 단체의 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감사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제도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방안은 서울시를 포함한 각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산하에“결산검사위원 선임 심의위원회”⁵⁾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광역시 및 산하 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위원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 공고를 하여 응모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7-9명의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의회의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비상임이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 선발과 같이 대상자 풀에서 추천하여 선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

5)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검사는 회계검사위원회(Audit Commission) 소속 감사관이나 민간공인회계사 회사 공인회계사들이 담당하는 데 회계검사 위원회의 주 임무는 각 자치단체의 검사를 담당할 검사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다.

이 방안의 긍정적인 면은 감사위원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산감사위원들은 위 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나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영향이나 간섭 등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특정자치단체에 과도한 인원이 몰린 반면 신청이 적은 자치단체간의 감사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다른 감사인의 보수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상급의회가 임의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광역시가 아닌 각 자치단체의 의회산하에 “결산감사위원 선임 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은 광역시의 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각 자치단체에서 선임하므로 더 지역적인 고려를 할 수 있고, 감사인의 보수도 각각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모결과 많은 수의 지원자가 있는 경우 타락지는 다른 자치단체의 감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3) 감사위원의 보수

감사위원의 보수는 감사위원의 확보 및 감사위원의 근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현 지방자치단체의 보수 수준이 낮기 때문에 big 4에 속하는 공인회계사 회사의 종사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반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감사원의 결산감사 참여에는 적극적이다.

현재의 보수수준은 감사일 1 일당 최저 5만원(태백시 등)에서 7만원(인천시 중구 등) 10만원(부산 수영구 등 가장 많음), 11만원(대전광역시), 25만원(부천시) 등 다양하고 또는 의회의 월 1일 수당금액(서울특별시)으로 하는 곳도 있다. 여비 및 교통비를 일비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실제 현장 확인 등의 경우에는 교통비를 정산하는 외에 보수의 명목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를 통합하여 보면 최저 1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이다.

또한 보수 적용일수는 검사와 보고서 작성을 포함하여 20일 또는 30일로 정하는 데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일 5만원이나 7만원의 수당으로는 제대로 된 대가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약 20년 전 최초 감사인 선임 조례를 만들 때 보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그 사이 이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하여도 그 수당은 공인회계사의 보수보다 매우 낮게 책정하였다. 부천시의 경우에

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의 대안으로 표준조례에서는 부천시와 같이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1일 보수의 한도를 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회의원의 수당의 경우 회기 중인 때에는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자치단체가 많고 이러한 수당의 제한 조치가 없는 단체도 있다. 의회의원의 수당의 경우에는 원래 1988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에는 의회의원은 무보수이며 회기 중에 만 활동비를 실비 지급하였고 이러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과 중복되므로 지급 제한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의원이 상근하고 의정활동비를 월액으로 받게 되므로 감사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결산검사 참여수당은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4) 검사기간

현재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결산검사 위촉일수는 20일(가장 많음), 25일, 30일(광역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며 보고서(의견서) 작성 기일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10일 기간을 주는 등 상이하다. 또한 결산검사 개시일은 대부분 5월 초나 중순을 시작일로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6월 초 부터 시작하는 경우(경기도 부천시) 등 다양화 되어있다

그런데 세무사나 세무신고를 주업으로 하는 공인회계사 대부분은 5월초나 중순으로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겹쳐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더라도 제대로 근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4일 총 8시간만 근무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보고서에도 표시하지 않아 결산검사를 불실하게 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6월부터 시작하는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감사위원은 검사기간 동안 거의 모두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2014년 까지 결산검사를 마친 세입세출결산서의 의회 제출은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데 2015 회계연도 결산서는 언제 제출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출납폐쇄기한인 2개월이 단축되므로 의회의 결산서 제출마감일을 4월 말까지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데 의회의 예산편성 및 결산심의 일정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조급히 할 사유는 아닌 것 같다.

국가의 경우 자치단체에 비하여 복잡한 면이 있지만 각 중앙관서와 기금은 매년 2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

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20일 까지 기획재정부에 송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⁶⁾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감사원의 결산검사 기간을 40일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그렇지 않다. 감사원은 매년 2월말 중앙관서 결산서가 작성되면 곧 바로 결산검사에 착수한다. 재무회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도 공인회계사들은 3월 초부터 동원되며 3월 한달 중에 모두 마치게 된다. 4월에는 검사결과를 정리하고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 데 이 처리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는 단순히 회계검사에 의한 결산확인 만이 아니고 각종 감사결과가 모두 수록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결산검사 개시 시기는 4월부터 시작하고 검사기간은 보고서 작성기한 포함 20일에서 30일간의 밴드를 주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월부터 시작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들이 12월 말 결산의 회계감사가 종료 되기 때문에 많은 공인회계사의 참여를 할 수 있다.

V. 결산검사 준칙

결산검사는 감사인이 지켜야 할 내용에 따라 체계적인 절차로 수행하고 보고할 것이 요구된다. 결산검사위원은 비록 민간인 신분이지만 결산검사는 공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결산검사인이 반드시 지켜야 독립성이나 자료의 처리, 알게 된 정보의 비밀엄수나 감사인의 자세 등은 물론이고 검사 실시과정이나 처리, 보고한 내용 등의 준칙이 필요하다. 결산검사 준칙은 일반기준과 실시 및 보고기준이 있다.

1. 일반기준

일반기준은 검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독립성이나 자료의 요구 및 처리, 자료의 사적사용 금지, 알게 된 비밀엄수나 감사인의 자세 등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다.

결산검사위원이 감사과정에서 검사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검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의회의원 역시 직

6) 국가재정법 제58조 제2항, 제59조-61조 참조

접 관여한 사항이나 검사결과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검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검사인은 혈연 또는 이전 같은 관서 근무 등으로 개인적 연고 등의 이해관계인의 이해에 영향을 주게 되는 사항은 검사 제척 사항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말고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검사와 관련 금품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특정정보를 알아 전달하거나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이해관계의 한편에서 검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결산검사의 경우에는 결산확인과 이에 관련된 회계검사를 감사범위로 하게 되므로 자료요구는 결산검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고 개인목적(예, 개인의 투자나 논문 등에 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자료는 공문서이므로 결산검사 종료 후에 지방의회 사무처 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임을 인식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검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검사인은 수검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반드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수검기관 등에게 위압감⁷⁾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검 기관 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자료나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하지 말아야 하고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결산검사 위원 중 영업을 하는 세무사와 타 결산검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는 검사기간 중 일부만 근무하고 검사일 모두는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검사인으로 임명된 이상 제대로 검사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게을리 하여 이를 의뢰한 의회나 시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실제 감사과정에서 근무하지 않은 날은 그 내용을 의회가 알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검사인은 다른 공공부문의 감사인과 검사업무 수행 중에서 거대한 회계부정이나 분식결산 등 중요한 검사결과 문제시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지 여부 등 감사위험을 고려하고 또한 검사업무 수행에서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사인도 다른 공공부문 감사인과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정당한 사유

7) 일부 의회의원인 감사위원이 수검자를 마치 피의자를 다루 듯 한 험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검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내용도 결산검사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나 현재는 이러한 내용을 정하지도 않고 있고 검사인에게 알려 주지도 않다. 장기적으로 결산검사인도 형법 적용 시에는 준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법적인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실시기준 및 보고기준

현행 결산검사는 체계적인 절차에 의한 검사준비나 검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각 개인의 경험에 의한 접근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검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세입내용을 이루는 수입건수가 수십만 건에 이르고 지출건수도 수만 건에 달하여 내부통제 평가 없이는 기본회계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부통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준칙에 반영하고 평가와 검사범위 설정 등의 기법은 검사매뉴얼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사증거 및 검사기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검사업무에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증거란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확신 즉, 사실 확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유형물이나 자료 등을 말하며 증거는 기록상의 증거, 물리적인 증거, 증언적 증거와 분석적 증거 등이 있다. 모든 증거는 신뢰성을 가지기 위하여 그 출처와 근거가 명시가 필요하다.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며 검사증거의 증거능력과 수감기관의 부담 등 증거수집의 비용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관련성 : 검사증거는 검사목적에 기여해야 함.
2. 신뢰성 : 검사증거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여야 함.
3. 충분성 : 검사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검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함.

결산검사 기법으로 대사기법, 비교기법, 분석기법이 있다.

각 검사인은 자료요구나 검토내용, 문제점 등 매일 매일 검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대표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가 종료되면 검사인은 검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요구한 자료 등과 함께 대표위원을 거쳐 검사업무 주관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검사인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검사 시 지적 및 문제된 사항에 대하여 수검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검기관이 조치한 내용 중 미흡한 내용이나 부적정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검사인은 검사가 끝난 뒤에 결산검사의견서와 검사조서 등을 작성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조서 및 자료는 결산검사를 의뢰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VI. 결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 회계연도 부터는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가 정식결산서로서 결산검사는 물론 의회의 결산심의와 결산승인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재정통계 일치 등의 문제로 출납폐쇄기한이 삭제되어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 등의 일정이 2개월 단축되었다.

결산검사 강화방안으로 결산검사 수행주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자체감사기구에서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방안은 현 자체감사요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광역자치단체의 개방형 감사관이 가지지 못하여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하기 어렵고 이러한 자체감사실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데에도 여러 문제가 남는다.

전담기구 설치방안으로 안전행정부 산하에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중앙에서 지방자치를 감시 감독하여 지방자치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엄청난 반발을 불러 올 것이며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 상설 감사기구를 대통령이나 국회산하로 하거나 감사원이 지방감사원을 신설하는 것도 여러 문제가 남는다. 광역시 산하에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현 개방형 감사관과 중복되며 이와 같은 기관은 별도의 인사권을 가진다 하여도 그 경비는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체감사 기구에 불과하며 이러한 개정은 당장 실현할 수도 없다.

재무제표의 결산검사를 민간공인회계사 회사에 의뢰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들의 민간기업의 재무제표 감사 접근방식으로는 별 편익이 없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정부부문의 감사원과 같은 회계검사 방식으로 하여 달라고 하기도 곤란하다.

마지막 대안으로 현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검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검사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보인다.

현재의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 검사인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다.

- 결산검사 위원을 공모하지 않고 청탁에 의한 연줄로 선임

- 의회의원의 결산검사위원 1/3 범위 내에서 임명
-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검자인 단체장이 1-3인의 위원 추천
- 일정기간 경과하지 않은 전임 회계과장 및 예산과장 선임

둘째 : 회계검사나 재정 전문가의 선임 제한.

- 정부부문이나 자치단체의 회계검사 경력자 등 전문가 배제
- 정부부문의 재정운영 경력자 등 전문가 배제(예,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결산업

무 경력자)

- 셋째 : 검사범위 불명확 및 교육훈련 미흡
- 결산검사 범위 불명확(감사라 인식하지 않거나 검사대상외 자료요구)
- 재무회계 감사중점을 상장법인 검사방식으로는 검토와 중복, 편익없음.
- 현재 1일 희망자에 의한 4-6간 교육으로 매우 미흡, 체계적 교육필요

넷째 : 검사인이 지켜야할 일반기준, 실시기준 보고기준 등 미제정

- 검사인의 독립성, 자료의 공적사용,
-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외부누설금지 및 비밀엄수
- 위압적 자세금지, 불성실한 근무지양, 성실한 검사자세
- 체계적인 감사절차에 의한 검사업무 수행
- 일일 감사상황 보고 및 검사결과의 체계적 보고.

결산검사는 회계검사에 의하여 결산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명백히 하지 않아 감사위원들이 제대로 회계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비회계 사무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등의 규정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승인은 의회의원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하는 방법보다 그 정보가 주는 재정집행에 대한 내용에 의하여 회계책임성 확보와 예산편성이나 재정집행의 의사결정의 당부나 효율성을 판단 승인하여야 하므로 결산검사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검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감사원에서 공인회계사를 동원하여 재무제표 감사를 하면서 분식회계여부에 대한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감사편익이 별로 없고 공인회계사들은 자기를 위한 감사를 하는 등 감사부작용 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의 결산검사에서의 준거기준은 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예산법규의 적합여부 등 합법성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타당성, 합리성 및 효율성 등 더 넓은 잣대를 사용하여 한다.

따라서 결산검사의 중점은 예산회계에서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법규순응 감사를 중점으로

하며 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는 자원 사용 및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결산검사 중점으로 할 필요가 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보면 의회의원은 정당소속이 대부분이어서 외관상 독립성의 결격사유가 된다. 그러나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의회 의원 1인은 대표위원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문의 회계검사의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지방재정업무에 더 정통하며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는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해 자치단체의 전임 회계과장이나 예산과장을 전문가로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은 퇴직후 일정기간(예, 3년) 선임하여서는 독립성 유지에 제척이 된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라 하더라도 정부회계 부문의 회계나 예산 등에 대한 교육 없이는 결산검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향후 결산검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체계적인 교육(예, 5일간 40시간)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무회계의 결산검사에 포함되더라도 많은 수의 결산검사인원을 증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며 현 수준에서 2명 정도 더 증원하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현행 검사위원의 선임은 해당자가 의회관계자에 신청하는 등 비공식적이고 연줄로 선임됨으로써 독립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공모방식으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시에 검사위원 선정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해당자치단체에 두는 방안이 있다.

현행 검사위원보수는 각 자치단체 별로 상이한바 너무 적은 보수는 검사위원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수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개정이 어려워 적정보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조례로 규정하지 말고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그 금액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검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독립성, 자료의 공적사용,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외부누설금지 및 비밀엄수 등을 지켜야 한다. 나아가 검사기간 동안 성실히 검사에 임하여 친절하고 겸손한 검사인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실시기준과 보고기준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감사준칙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감사원

- 2005. 재무감사 매뉴얼

- 2011. 국가재무제표 검사 매뉴얼

안전행정부

- 2012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내실화 방안 용역보고서(한국정부회계학회)

- 2013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

미국연방정부 회계검사원(GAO)(2007) 재무감사 매뉴얼.

국제최고감사기구(INTOSAI)(2001). Code of Ethics and Auditing Standards.

감사연구원(2008), 「지자체 등 자율적 감사체계 구축방안」, 내부자료.

정부혁신위원회(2006), 「지방감사제도 개선방안 검토자료」 유인물.

한국행정연구원(2007), 「효율적인 국가감사체계 확립을 위한 지방감사제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이경섭

a 2010. “발생주의 정부회계 정보 활용방안,”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8권 제2호.

b 2013. “자치단체 결산검사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1권 제1호.

c 2014.6. “우리나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 운영실태” 미발표 자료

김경호 2014.8.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방안”한국지방계약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김수희 2010.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제도 도입현황 및 과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8권 제2호.

강인재

a. 2012.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활용성 제고방안 - 전문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7권 제2호.

b. 2009.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7권 제2호.

문태근(2008), 「영국의 공공감사제도: 영국 감사원과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행정DB센터.

염차배(2010), 「지방자치 감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2010.6. 1041-1071면

윤학권(2005). 「지방의회 결산검사 개선방향」, 발표자료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00 시·도 및 관하 기초 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 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00 광역시의회와 각 기초 자치단체 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정하며 별표 1 "검사위원 인원"과 같이 한다.

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회의원이나 재정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에 비추어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예산·결산 및 감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험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위 1. 2호의 해당자는 안전행정부에서 인정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우선 선임한다.
5. 위 2호의 해당자로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3조(결산검사위원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00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검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00의 의회에 결산검사 위원 선정 심의 위원회(이하 "선정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00 의회는 결산검사를 담당할 검사위원의 선정을 위한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을 매년 1월말까지 선발한다. 선정 심의위원회는 7명이상 9명 이하로 하되 시민단체 종사자, 언론인, 학계 및 의회의원 등으로 구성하며 의회 사무처의 공무원 1명의 간사를 둔다.

③ 선정 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의결로 선정한다. 동수인 경우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장이 검사위원 선정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소정의 위원회 심의 및 참석에 대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선정 심의위원회는 20일 이상 언론매체 등의 공고를 통하여 검사위원의 모집공고를 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2월말 까지 검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검사위원 공모 신청서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선정 심의위원회는 의회의원들 제외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되 특

정 자치단체에 제2지방 신청자를 포함하여도 감사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5일간의 신청기간을 두어 긴급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④ 선정 심의위원회는 선정된 감사위원을 00 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⑤ 의회는 선정 심의위원회의에서 선정된 감사위원을 선임할 것을 의결하고 의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의회는 선정결과가 심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은 임명 전에 결산검사 준칙을 준수하고 검사기간 중에 성실히 검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위원) ① 의회위원은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은 감사위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그러나 각 감사위원의 검사내용에 대한 관여 등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④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감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감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감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7조(감사위원의 직무) ① 감사위원은 00 단체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작성하여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00 단체장에게 제출하며 매일 매일 작성한 검사조서와 수집한 검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한다.

④ 감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감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감사위원의 신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8조(검사협조) 검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감사위원으로부터 결산

.....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위원에게 감사일수에 기준금액을 곱하여 매년 예산에 계상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감사위원들이 현지 확인 출장 등에 따른 경비가 소요된 때에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한 경우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검사 인원

단위 : 인

자치단체	자격구분	인원
00 광역시, 도	의회의원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9-11
	재정, 회계검사 전문가	
	계	10-12
00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3-6
	재정, 회계검사 전문가	
	계	4~7

※ 조례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별로 인원을 확정하여야 한다.